

CJ그룹 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해설



청탁금지법
COMPLIANCE
가이드(3판)

머리말

헌법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를 기치로,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이 2016. 9.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기존 법률이 청탁과 대가성이 결부된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구별하여 각각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자·금품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및 임직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사실상 모든 국민을 법의 수범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매우 넓혀 CJ그룹 일부 계열사를 비롯한 많은 민간기업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WORLD BEST CJ를
달성하는데 본 가이드가
그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 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다소
둔감해진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신고·제보 등으로 인
한 처벌 및 언론보도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
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
도로 사회 일반 규범으로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는 바, 임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CJ는 ‘정직, 열정, 창의, 존중’이라는 행동원칙을 통해
윤리 경영을 선도하는데에 누구보다 앞장서왔습니다. 우리가 청탁
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은 CJ경영철학의 실천이며,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한 필수사항임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생활문화산업의 리더로서 **WORLD BEST CJ**를 달성하는데
본 청탁금지법 가이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C O N T E N T S

CHAPTER 01 | 청탁금지법 가이드

1.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010
2. 부정청탁의 금지	020
3. 금품등 수수의 금지	032
4. 신고 및 처리절차 등	047

CHAPTER 02 | 주요 Q&A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Q01. 공직유관단체	059
Q02. 무기계약 근로자	060
Q03.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	060
Q04. 사보를 발행하는 민간 기업	061
Q05. 대학병원 의사	061
Q06. 쇼호스트	062
Q07. 방송사 시사토크쇼의 고정 패널	063
Q08. 공직자들의 배우자	063
Q09. 언론사 임직원 중 취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064
Q10. 부정청탁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인	064



2. 부정청탁의 금지

Q11.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066
Q12. 언론사 취업 부탁	067
Q13. 경쟁업체 배제 요구	068
Q14. 인사담당자에게 승진 부탁	068
Q15. 부정청탁 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069

3. 부정청탁의 예외

Q16. 법령상 절차에 따른 요구	071
Q17. 공개적으로 피켓 시위	072
Q18. 공무원 이메일을 통한 공개적인 요구	073
Q19. '선출직 공직자등'의 의미	073
Q20. '공익적 목적'의 민원전달	074
Q21. '공익적 목적'의 입법활동 요구	074
Q22. 법정기한 내 직무 처리 요구	075
Q23. 직무의 진행 상황 확인	076

4. 부정청탁행위의 처벌과 신고

Q24.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의 대응	078
Q25.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079
Q26. 같은 회사 내 다른 임직원의 부정청탁	080

5. 금품등의 수수 금지

Q27. '동일인'의 의미	082
Q28. '1회'의 의미	083
Q29. 동일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한 금품 수수	084
Q30. 교통편의 제공이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085
Q31. 제공받은 금품을 고아원에 기부	085
Q32. 정가와 실제 구입가가 다른 선물	086
Q33. 회원제로 운영되는 숙박 제공의 가액 평가	086
Q34.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받은 접대	087
Q35. 공직자등과 식사 후 각자 계산	088
Q36. '직무관련성'의 의미	089
Q37.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의 식사	090
Q38.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091
Q39.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금품 수수	092

6.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Q40.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한도내의 식사 접대	094
Q41. 식사 접대 시 서로 다른 가격대의 식사 주문	095
Q42.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의미	096
Q43. 업무추진비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구입	096
Q44. 기자들에게 보내는 명절선물	097
Q45. 농수산물공품에 해당하는 선물 제공	097
Q46. 식사와 선물을 함께 수수	098
Q47. 유가증권이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098
Q48. 회사자금으로 여러 명이 경조사비를 제공	099
Q49. 계열사 직원간 식사	100
Q50. 교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	101
Q51. 교수와의 용역계약	102
Q52. 사외이사의 보수	103
Q53. 사외이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103
Q54. 시가보다 낮은 금액의 거래	104
Q55.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105

Q56. 동창회 회칙에 따라 제공한 금품등	105
Q57. 질병 · 재난 등 어려운 처지	106
Q58.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106
Q59. '공식적 행사'의 판단기준	107
Q60. 공식적 행사에서 특정인에게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	107
Q61. 제약협회 CP규정에 따른 금품 제공	108
Q62. 공무원 할인 마케팅	108
Q63. 결혼식 하객으로서 식사	109
Q64.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09
Q65. 기고와 별도로 한 외부강의등	110
Q66. 방송사 스타 PD의 행사강연료	111

7. 금품등의 반환 등

Q67.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113
Q68. 식사 대접을 받은 다음 동일한 가액으로 접대	113
Q69. 금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114
Q70. 금품 수수 후 지연하여 반환	115
Q71. 집으로 선물이 배송되어 올 경우 조치	116
Q72.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접대비를 회사에 청구	116

8. 청탁금지법 위반의 신고 및 조치 등

Q73. 음해성 신고 및 허위신고	118
Q74.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한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118
Q75. '수사필요성'의 판단기준	119
Q76. 내부징계 후 별도의 법적 제재	119

APPENDIX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22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01

CHAPTER

CJ 임직원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법의 적용 범위부터 개요와 내용,

용어 해설,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까지 설명합니다.

청탁금지법 가이드(3판)

- 1.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010
- 2. 부정청탁의 금지 020
- 3. 금품등 수수의 금지 032
- 4. 신고 및 처리절차 등 047

01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직유관단체
3.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4.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5.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 포함)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을** 제 공한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과, 대한 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1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유관단체에는 어떤 단체가
있나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반기마다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합니다.

- 2022. 7. 4. 기준 1,376개의 기관이 있으며,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공기업, 경기관광공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과 같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18기념재단, (주)킨텍스, (주)강원랜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는 단체, 한국거래소와 같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 반기별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현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임원선임 권한 등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 중 **기획재정부3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2022. 8. 1. 기준 350개의 기관이 있으나 대부분 공직유관단체와 중복되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등이 포함됩니다.
- ‘공공기관’의 지정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학교법인’은?

유치원, 각급 학교를 비롯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까지도 모두 ‘공공기관’에 포함되나,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는 사립 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언론사’란?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사로 정의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합니다.

특히, 방송사업자에는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방송사업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있나요?

- KBS, SBS, MBC 등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인 티브로드, 아름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 등 위성방송사업자, YTN, 한경TV, 각종 스포츠채널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있습니다.
- CJ그룹 계열사 중 CJ ENM, CJ 올리브네트웍스의 자회사인 다이아웨어(주)(기존 CJ파워캐스트가 CJ 올리브네트웍스에 흡수합병됨)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기타간행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된 잡지·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사업자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있나요?

- 동일한 제호(題號)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 각종 분야에 관하여 월 1회 이하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하며, “기타 간행물”은 월 1회 이하 발간되는 간행물 중 책자가 아닌 형태를 말합니다.
- 따라서 CJ그룹 계열사 중 잡지인 ‘퍼스트룩’을 발간하는 CJ ENM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주의  하세요

CJ ENM, 다이아웨어(주) 등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11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렬의 종류를 불문한 공무원원을 모두 포함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제3조)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국회의원은
제외되었다던데요?

-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인 이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가 적용됩니다.
- 다만,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범위 내에서 부정청탁의 예외가 인정될 뿐입니다.

‘각급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학교법인·언론사의 임직원도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임직원의 업무 범위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직 근로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형태에 대하여도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포함된다면,
사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병원은 어떤가요?

- 청탁금지법상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 사립대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임직원도 모두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립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은 운영주체가 대 기업의 문화재단 등이어서 공공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의대 교수 직위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병원 의사로서의 지위와 교수로서의 지위를 나누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보 등을 발행함에 따라
‘언론사’에 포함된 기업체의
임직원도 공직자등인가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언론사와 달리 사보 등을 발행함에 따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포함된 기업체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대표자 포함)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01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명예교수, 겸임교수 등도 모두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시간강사 (2019.8. 1.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원에 포함) 등을 말하고 직원은 학교 및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제공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는 공직 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도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경우에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인 공인회계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 회위원인 건축사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직 자등에 포함됩니다.

주의  하세요

CJ ENM, 다이이웨어 등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03 부정청탁 금지, 04 금품 수수 금지, 05 신고 및 처리절차 등** 관련 부분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도 청탁금지법을 따라야 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일반인도
청탁금지법을 따라야 하나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등 외에도, '쌍벌제'를 도입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하는 모든 국민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속주주의)은 물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속인주의)에게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주재원 등도 해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처벌되나?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면 임직원이 소속된 회사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수수 금지 금품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약속,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회사도 제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회사가 면책되기 위한 요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어느 정도를 요구하나요?

-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판례상 확인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면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② 직원들의 법령 위반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는지 여부
 - ③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 시정 및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④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법인의 대응 여부

REFERENCE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가이드에 따른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요지

① 경영진의 리더십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

임원 등 상층부에서부터 부패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 및 정책이 확립되어 있을 것

② 윤리강령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절차

명확하고 자세한 윤리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정책·절차를 구축하여 전 사원에게 전파하고 습득시킬 것

③ 인적·물적 자원 구비 등 합리적인 노력

조직 내에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구비하는 등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에 투입할 것

④ 위험의 평가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및 평가

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을 효과적이고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추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⑤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대한 교육 및 의사 소통

전사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철저히 집행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

⑥ 컴플라이언스 운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징계 조치

회사구성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개발과 향상 혹은 부패행위 적발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을 구비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절차를 구비할 것

⑦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및 시정 조치

의심되는 부패행위 적발 시 보복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내부적인 고발이나 보고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구비하고, 내부고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은폐하지 않고 철저히 하고 효과적인 내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것

주의  하세요

CJ인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까지 처벌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여야 하고,
모든 CJ그룹 계열사는 상당한 주의·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부정청탁의 금지

개요

SYNOPSIS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다음과 같은 **14가지의 대상직무에 대한 부정청탁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인·허가 등 신청의 처리 관련 부정청탁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3. 모집·선발·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관련 부정청탁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의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8. 보조금·장려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 개입 관련 부정청탁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 등 거래 관련 부정청탁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논문심사, 학위수여 관련 부정청탁
11. 병역 관련 부정청탁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14.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 등 관련 부정청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7가지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4.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또는 진행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는 행위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상담형식을 통한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 등 설명 요구하는 행위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부정청탁을 한 자와 그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등은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신고**하여야 합니다.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란?

실제 청탁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은 제외됩니다(단,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란?

'직접'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청탁 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불이익이 간접적·반사적이라면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하여 가족을 위한 청탁도 직접 청탁이 아닌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금지됩니다.

02

부정청탁의 금지

회사를 위한 임직원의 청탁은 직접 청탁인가요?

- 회사와 임직원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구별되므로, 임직원의 회사 업무와 관련한 청탁은 그 법적 효과가 회사에 귀속되어 제3자를 위한 청탁이 됩니다.
- 이 경우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며, 다만 소속 임직원의 부정청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다음의 공직자등이 포함됩니다.

-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 직무상 결재선상에 있는 국과장 등
-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른 공직자등을 통해서** 부정청탁을 한 경우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2 청탁금지법은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위반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위반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서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감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지위 권한 남용** 15. 위 14가지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들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도 법령에 포함되나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의 기준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고시의 위반은 곧 「식품위생법」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호의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란 무엇인가요?

-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의 분야를 계약 관련 법령으로 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계약 관련 법령은 국가계약법 등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상 학교급식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등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경우만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인가요?

-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14가지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부정청탁의 유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란?

제9호는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과 관련한 부정청탁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 예는 무엇이 있나요?

-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학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해당 병원 원무과장에게 접수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청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은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문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요구'란?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요구의 예는
무엇이 있나요?

공공기관과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
에 관한 법률」 등 법령·기준이 정한 절차 등 형식적 요건을 구비
하여 민원인이 소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민원신
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내용이 부정청탁을
포함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하나요?

- 요구내용이 부정청탁을 포함하더라도 법령 및 기준이 정한 절차·방
법을 준수하였다면 부정청탁행위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란?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부정청탁은 밀행성(密行性)을 전제로 하므로, 행위상
황이 공개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공개적으로'란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시위, 공청회,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
등이 있습니다.
-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무원의 이메일로 민원을 넣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구내용이 부정청탁을
포함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하나요?

- 제2호의 예외사유는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이상 요구하는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란?

‘선출직 공직자들’은 국회의원, 구청장,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말합니다.

→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직원, 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을 말하며, 주된 목적이 공익적 목적이면 충분합니다.

→ 오로지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충민원’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등을 의미합니다.

‘전달행위’란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달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청탁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는 위 사유에 해당하나요?

-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을 구비하지 못하여, 지방의회 의원은 제3자를 위하여 금지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운영자는 제3자를 통해 금지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정당한 업무행위,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그 인정사례가 드물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4 부정청탁을 한 자와 그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등은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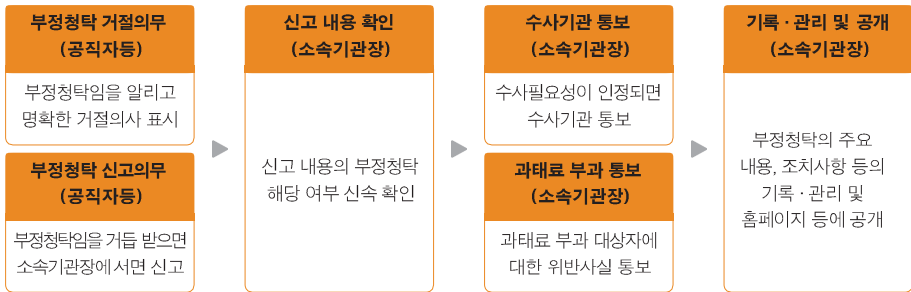
행위자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한 자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한 경우		제재 규정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다만, 법인이 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

주의  하세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한 자는 별도로 제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정청탁 처리절차 개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의 의무는?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

공직자등은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의무

공직자등이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재차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이 거절의무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신고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 거절·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공직자들이 한 회사의 여러 명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부정청탁받은 경우도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들'을 기준으로 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사안은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이해당사자가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재차 동일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이 거절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이나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도 제재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내용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이 부정청탁을 거절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를 제재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정청탁' 신고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처리는?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범죄의 혐의 및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 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내용 등은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CJ 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도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소속기관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CJ ENM, 다이아웨어(주) 등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CJ 그룹 계열사의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는 소속기관장으로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고처리절차의 상세 내용은 **05 신고 및 처리절차** 등 관련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03

금품등 수수의 금지

공직자등은 다음과 같은 **금품(이하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1. 직무와 관련 없어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2.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8가지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
2.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일정한 가액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3. 체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5.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자와 받은 공직자등은 모두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습니다.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거절·반환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 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동일인’이란?

회사의 임원 A가 70만원,
직원 B가 30만원,
직원 C가 3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상품권을 각각 직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甲에게 제공
한 경우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
나요?

실질적 비용부담 주체(금품의 출처)가 누구인지의 문제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단, 법인에 대한 제재는 별도의 양벌규정에 따릅니다.

- 甲은 A, B, C로부터 각각 금품을 받았으나, ‘금품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는 동일인인 회사가 되어, 甲은 **동일인인 회사**로부터 1회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A, B, C는 각각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甲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각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직원 A, B, C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 원 초과 제공)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A, B, C가 회사 입부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다만, 회사가 상당한 주의나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 가능합니다.

‘1회’란?

1차에서 60만원치 식사를,
2차에서 300만원치 술값을
계산한 경우는 어떤가요?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도 고려하여,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나 목적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1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소위 ‘쪼개기’ 사안으로, 1차 식사 접대와 2차 주류 접대는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 ‘1회’로 평가됩니다.
- 목적적 관련성까지도 고려하여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 ‘금품을 제공한 자’의 회계연도가 아닙니다.
- 일반적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학교의 회계연도는 어떤가요?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됩니다.

'금품등'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모든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분	내용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편의 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경제적 이익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취업제공이란 무엇이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취업제공도 수수 금지 금품에 포함되나요?

- 취업제공은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처리, 조언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금, 봉급 등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배우자에게(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업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나, 자녀나 부모 등에게 한 취업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의해서는 금지되지 않고 「형법」 등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의 가액은 금품을 수수(요구, 약속, 제공)한 시점의 실제 지불된 비용(구매가)으로 산정합니다.

→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구매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합리적 자료를 우선으로 산정합니다.

금품 제공자가 공직자등과 함께 향응을 한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가 소비한 비용으로 하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만일,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제3자 접대에 들어간 비용은 공직자등 접대에 쓴 비용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란?

‘직무’란 ‘공직자들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합니다.

- 법에 따른 직무는 물론, 사실상·관례상 처리하는 직무도 포함되며,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판례는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며(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 2 결정),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 또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사실상·관례상 처리하는 직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사실상 처리하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관례 혹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관련 서류 보관·관리 직무 등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개인택시 면허발급 결정의 중간결재자에 불과한 담당부서의 과장이 면허발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범피수사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하는 검찰주사가 피의자로부터 기소유에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란?

법률혼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들이 알게 된 경우, 공직자들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약속의 의사표시’란?

‘제공’은 상대방이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직자들이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금품을 제공한 자의 위반행위는 성립합니다.

2 청탁금지법은 8가지 금품 수수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③ (전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란?

목적은 벗어난 것으로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외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등의 경우라도 목적상 제한이 있습니다.

→ 목적상 제한 내에 있는지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사적 친분관계,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고 허용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물 수수가 금지됩니다.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담임교사가 성적과 관련하여 촌지를 받는 경우 등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가액 범위를 설정합니다.

항목	가액범위	설명
음식물	3만원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선물	5만원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이에 준하는 것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 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예외적으로 10만원 한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에 한정하여 20만원 한도) ※ 2018년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영화관람권 등 유가증권이 제외되었음
경조사비	5만원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단,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예외적으로 10만원 한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부친상에 조의금을 지급하면서 화환을 함께 제공한 경우는 얼마까지 제공이 가능한가요?

-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가액범위 내의 액수라면, 무조건 허용되나요?

- 아닙니다.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라도 제한이 있는 것이고,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과 상관없이 뇌물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재건축위원장이 재건축설립인가를 위하여 관할 구청의 과장에게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사안에서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습니다.

주의  하세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이고 허용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정당한 권원'이란?

정당하지 않은 권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계약 관계 등 권원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러한 권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권원'이란 어떠한 법률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말하고, 행위에 대한 '사유'나 '근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증여를 위장한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가장매매 등은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됩니다.

→ 변호사가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고위 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천만원의 매매로 가장한 경우 등

'단체의 기준이나 공직자와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제공'이란?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학연·지연·혈연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또한, **질병·재난** 등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주식 투자·자녀 해외유학 등의 어려운 처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이란?

'공식적인 행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에 한정됩니다.

→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일률적으로'란 특정 개인·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이라면 교통, 숙박, 음식물
외에 선물도 허용되나요?

- 아닙니다. 제6호의 예외사유는 다른 예외사유와 달리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선물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됩니다.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이란?

건전한 일반인이면 납득할 수 있는 금품 수수를 의미하며,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 별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금품을 받는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말하며, 제공자의 내부기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금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 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실체를 가지는 경우에는 「향토진흥법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연인관계인 행정부 사무관에게 직무상 관련 있는 대기업의 직원인 남자친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을 선물한 경우,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외부강의등’이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혹은 ‘회의형태’여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법문에 예시된 강의·강연·기고 외에도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용역이나 자문’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일반적으로 ‘용역이나 자문’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이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분류	상한액(단위: 1시간, 기고 1건)
공무원·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p style="text-align: center;">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40만원</p> <p>(1시간 초과시 전체 시간에 관계없이 사례금 총액 60만원)</p>
학교, 학교법인 (국공립·사립불문) 및 언론사 임직원	<p style="text-align: center;">시간당 100만원</p> <p>(1시간 초과시에도 시간당 100만원씩 지급 가능)</p>

※ 2018년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설령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별로 상한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각 기관이 내규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사례금 상한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금품을 제공한 자와 받은 공직자등은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금품 수수 관련 제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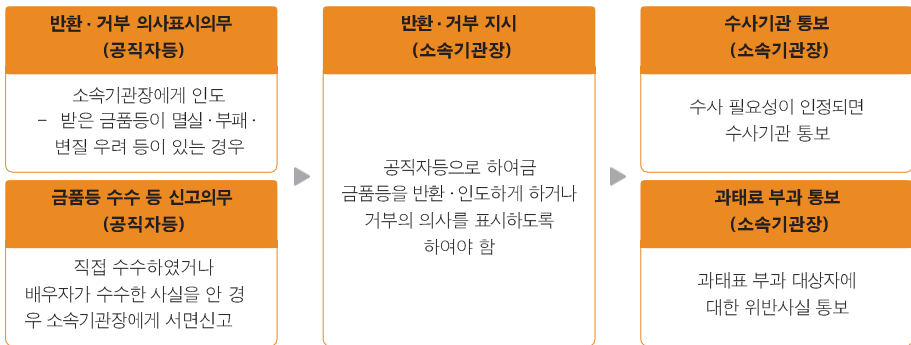
구분	제재 대상	제재수준
금품 수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법인이 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됨)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하세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의 수수를 거절하거나 금품을 반환한 경우에도 금품을 제공한 자를 별도로 제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공직자등은 금품 제공에 대해 거절·반환·신고 하여야 합니다.

부정청탁 처리절차 개요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의 의무는?

수수 금지 금품의 반환의무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 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품을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단, 부패·변질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의 신고의무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들이 반환·신고한 경우에 법적인 혜택은 없나요?

- 공직자들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다만, 자진신고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반환·신고하는 경우의 '지체 없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합니다. 단,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하고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이 금품 수수를 거절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및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경우, 금품을 제공한 자도 제재에서 제외되나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제공한 자를 제재합니다.
- 따라서 공직자들이 금품 수수를 거절·반환하거나 신고하여 제재를 면하게 된 경우에도, 금품을 제공한 자는 여전히 제재대상인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품 수수'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처리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인도받은 경우,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금품을 반환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범죄의 혐의 및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CJ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도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 CJ ENM, 디아이웨어(주) 등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CJ 그룹 계열사의 소속 임직원은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는 소속기관장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고처리절차의 상세 내용은 **05 신고 및 처리절차** 등 관련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04

신고 및 처리절차 등

개요

SYNOPSIS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 2. 감독기관
 - 3. 감사원
 - 4. 수사기관
 - 5. 국민권익위원회
- } 조사기관

조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를 청탁금지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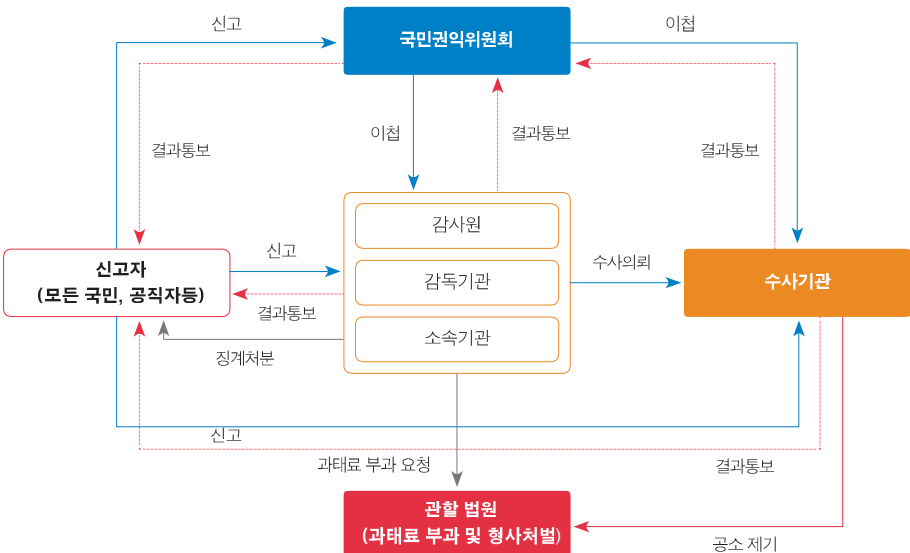
소속기관장(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1. 위법한 직무처리자에 대한 직무상 조치
- 2. 신고자보호제도
- 3. 청탁금지법 교육
- 4. 청탁방지담당관의 운영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하여야 합니다.

1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처리절차 체계도



'신고주체'는?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공직자등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신고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그 외 조사 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무고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신고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본인의 **기명신고**가 원칙이나,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대리인인 변호사는 신고 취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처리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넘겨받은 조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수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조사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공소제기, 수사기관에 통보,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조사기관이 조사·감사·수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기관은 소속 공직자등 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제3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을 제외한 조사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임의적인 협조에 조사가 가능하고, 협조가 없는 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신고자가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가 가능하고, 재조사 요구를 받은 기관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금품 제공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조치

- | | |
|------------------------|----------------|
| 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직무상 조치 | 2. 신고자보호제도 |
| 3. 청탁금지법 교육 | 4. 청탁방지담당관의 운영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직무상 조치'는?

소속기관장이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무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조치

- 위법한 직무처리를 한 공직자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① 직무 참여 일시 중지 ② 직무 대리자의 지정 ③ 전보 등의 조치 실시
- 단, 위법한 직무처리를 하였음에도 공직자등에게 계속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① 해당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②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③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위 조치와 별도로 징계처분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제도'란?

청탁금지법은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 보호제도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고 있습니다.

→ 신고에 협조한 자가 신고·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에 준하여 보호합니다.

공직자등이 하는 신고 외에 '누구든지'하는 신고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기명신고'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포괄하므로, 신고자 보호제도 역시 '기명신고' 및 '비실명 대리신고' 모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신고자 보호제도		위반 시 제재
신고자 등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조치요구) 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로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 해임 등 신분상 조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분상 불이익 조치 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등 방해 및 취소 강요의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 거부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신분상 조치 외)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근,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평가 등의 차별,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이 있습니다.

‘보상금·포상금 제도’란?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를 한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한 신고는 청탁금지법상 제재의 면제사유로서 의무의 이행이므로, 보상금·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보상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포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하여 금품을 신고한 경우 신고금액의 30%(5억원 한도) • 나머지 사유는 2억원 한도 	30억원 한도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음)

‘구조금 제도’란?

‘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정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 (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

청탁금지법상 ‘교육’은?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할 때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3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1조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금지규정 위반한 경우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금품 제공에 대한 거절 혹은 반환·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신고자 보호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및 회의 참가와 관련하여, 사전 신고의무 및 초과 사례금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은 반드시 하여야 하나?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및 관련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벌이나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도 징계처분을 해야 하나요?

-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도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공직자등이 부정청탁·금품에 대해 거절하거나 신고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청탁금지법은 쌍벌제를 채택하고 있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금품을 거절하거나 신고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정청탁·금품을 제공한 자는 그와 무관하게 제재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02

CHAPTER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가이드입니다.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질문으로 만들고
이에 저촉되는 법령과
가부설명을
답변으로 담았습니다.

주요 Q & A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058
2. 부정청탁의 금지	065
3. 부정청탁의 예외	070
4. 부정청탁행위의 처벌과 신고	077
5. 금품등의 수수 금지	081
6.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093
7. 금품등의 반환 등	112
8. 청탁금지법 위반의 신고 및 조치 등	117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01

- Q01. 공직유관단체
- Q02. 무기계약 근로자
- Q03.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
- Q04. 사보를 발행하는 민간 기업
- Q05. 대학병원 의사
- Q06. 쇼호스트
- Q07. 방송사 시사토크쇼의 고정패널
- Q08. 공직자들의 배우자
- Q09. 언론사 임직원 중 취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 Q10. 부정청탁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인

Q 0 1

공직유관단체

QUESTION

A기업체는 공직유관단체인 산업은행의 자회사입니다. 이 경우 A기업체도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중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매년 반기마다 지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 등이 정부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지정 및 고시를 받아야만 공직유관단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019. 7. 1. 기준 1,175개의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기업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여지는 없습니다.

반기별 공직유관단체 지정 현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0 2

무기계약 근로자

QUESTION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유사·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NSWER

(공직유관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0 3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

QUESTION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나요.

ANSWER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 0 4 사보를 발행하는 민간 기업

QUESTION

현재 국내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를 발행 중입니다. 이처럼 사보를 만들어 고객에게 배포하는 '민간 기업'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보도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 후 발행하고 있다면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보 발행자도 **언론사**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로 본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Q 0 5 대학병원 의사

QUESTION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가 아닌 의사에 대한 금품등 지급도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나요.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 소속 의사인 경우는 어떨까요.

ANSWER

네. 대학병원이라면 교수가 아닌 의사에 대한 금품등 지급도 청탁금지법상 금지됩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2) 사립대학교병원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립한 병원이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각종 대학병원의 모든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인 경우는 국공립 병원 등 공공기관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반병원의 의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닙니다.

Q 0 6
쇼호스트

QUESTION

특정 방송사(공공기관인 언론사에 해당)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출연하는 프리랜서 쇼호스트 또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요.

ANSWER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임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이란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제작사·프리랜서 등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형식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쇼호스트가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종속적 관계가 인정된다면 설령 쇼호스트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Q 0 7
**방송사
시사토크쇼의
고정패널**

QUESTION

방송사 A는 시사성 있는 이슈에 대해 교수, 변호사 등을 고정 패널로 하여 토크쇼 형식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 B는 다음 회차 주제로 다룰 이슈가 대기업 S사의 산업재해문제로 지정된 후, S사의 홍보실 임원인 C와 저녁식사를 하고 식사비 20만원을 C가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나요.

ANSWER

방송사 A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변호사 B와 A 간에 **근로계약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의 임직원은 아닙니다.

다만, C가 식사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해당 시사프로그램에서 사실과 달리 산업재해문제에 대해 S사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 달라는 등)을 한 경우, B와 C는 각각 「**형법상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0 8
**공직자등의
배우자**

QUESTION

공무원의 배우자인 민간 기업체 직원이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

ANSWER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가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체의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0 9

언론사 임직원 중 취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QUESTION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방송사의 경우 방송 외에도 영화, 음악, 공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이외의 부문(영화, 음악, 광고 등) 또는 스태프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ANSWER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할 경우 **업무범위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방송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이상, 사업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Q 1 0

부정청탁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인

QUESTION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인도 법적 용을 받나요. 그렇다면 소속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회사도 제재를 받나요.

ANSWER

네.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도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쌍벌제를 도입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제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회사 소속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부정청탁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 임직원을 벌하는 외에 **회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

02

- Q11.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 Q12. 언론사 취업 부탁
- Q13. 경쟁업체 배제 요구
- Q14. 인사담당자에게 승진 부탁
- Q15. 부정청탁 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Q 1 1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QUESTION

공공기관인 언론사에 해당되는 회사의 실무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팀장 및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받았다면 셋 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인가요.

ANSWER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전결권이 위임된 경우에도 대외적 명칭은 기관장이고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도 없으므로 전결권을 위임한 기관장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결재권자가 전혀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재권자에게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담당 실무자, 팀장, 대표이사가 모두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한 경우라면 셋 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 2

언론사 취업 부탁

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에서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정년퇴직한 A는 일자를 알아보던 중 방송사에 취업하고자 하였습니다. A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친구 B를 통해 해당 방송사 인사담당 국장 C에게 취업을 청탁한 경우는 부정청탁 인가요.

ANSWER

네. 전형적인 취업 관련 부정청탁입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채용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채용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퇴직공무원 A는 취업심사대상자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자인 친구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인사담당 국장 C는 기자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인사담당 국장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사담당 C가 기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퇴직 공무원 A를 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1 3

경쟁업체
배제 요구

QUESTION

A기업체 대표가 경쟁업체B를 계약에서 탈락시켜 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NSWER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직접 자신의 이익(경쟁업체 탈락)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지만 그 효과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경쟁업체)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Q 1 4

인사담당자에게
승진 부탁

QUESTION

공공기관인 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A가 회사 내규상 승진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인사담당자인 B에게 자신이 직접 승진을 청탁할 경우 A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NSWER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사 내규 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인사고과나 연차를 충족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자신을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행위인 부정청탁에는 해당하므로 만약 인사담당자 B가 이에 응하여 A를 승진하게 한 경우 A와 달리 B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Q 1 5

부정청탁 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QUESTION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가 조사 공무원에게 기업의 법 위반사실을
느 감아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해당 공무원이 이러한 부정
청탁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NSWER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
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
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

이때 조사 공무원은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
시 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
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청탁
금지법 제7조 제2항).



■ 부정청탁의 예외

03

- Q16. 법령상 절차에 따른 요구
- Q17. 공개적으로 피켓 시위
- Q18. 공무원 이메일을 통한 공개적인 요구
- Q19. '선출직 공직자등'의 의미
- Q20. '공익적 목적'의 민원전달
- Q21. '공익적 목적'의 입법활동 요구
- Q22. 법정기한 내 직무 처리 요구
- Q23. 직무의 진행 상황 확인

Q 1 6

법령상 절차에
따른 요구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고 난 후 사무관 등을 찾아가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청탁금지법은 각종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모든 소통 창구까지 통제하는 법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에게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권리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과징금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식의 청탁은 금지됩니다.

Q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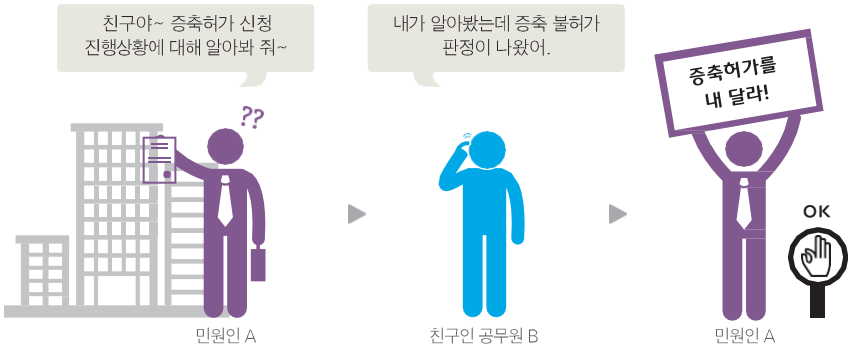
공개적으로
피켓 시위

QUESTION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해당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인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후 민원인 A가 건축 법령에 따른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해당 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 시위를 한 경우 민원인 A의 일련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사안은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두 개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① 공무원에게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직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② 구청 민원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은 대개 밀행성을 전제로 특혜를 요구하는 바, 청탁금지법은 특정한 행위라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개적으로’의 의미는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1 8
**공무원
이메일을 통한
공개적인 요구**

QUESTION

국도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을 통해 건축 허가를 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을 경우, 이는 부정청탁의 예외인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나요.

ANSWER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예외사유에서 ‘**공개적으로**’의 의미란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민 신문고 등 정식 민원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접촉했다면, 이메일 주소가 홈페이지에 적시돼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정청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 9
**‘선출직 공직자등’의
의미**

QUESTION

부정청탁의 예외인 ‘공익목적의 선출직 공직자등에게 민원 전달’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정당의 당직자도 ‘선출직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ANSWER

‘선출직 공직자등’에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정당의 당직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사유의 주체로 ‘선출직 공직자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다른 예외 사유와 달리 주체를 규정한 입법취지 및 예시된 주체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에는 예시한 **‘선출직 공직자등, 정당, 시민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만** 포함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협회 등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이 다수에 공통된 고충민원을 전달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은 ‘선출직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2 0 '공익적 목적'의 민원전달

QUESTION

기업의 대관담당자가 국회의원에게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 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므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여, 국회의원이 이를 고용노동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익적인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국회의원이 입법예고안이 확정되기 전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인 기업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행위이므로, 위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 2 1 '공익적 목적'의 입법활동 요구

QUESTION

대기업 재무팀 직원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경제를 위해 법인세 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을 하는 행위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에게만 조세 등을 감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으나, **다수인을 위하여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Q 2 2
법정기한 내
직무 처리 요구

QUESTION

물류업체 영업사원 C는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추고자 고향 선배인 관할세관 직원에게 수입물품을 신속히 통관시켜달라고 부탁했다면 C는 부정청탁을 한 것인가요.

ANSWER

법령이나 절차를 위반하면서 신속히 통관하여 달라고 부탁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될 것이나, 단순히 통관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정도라면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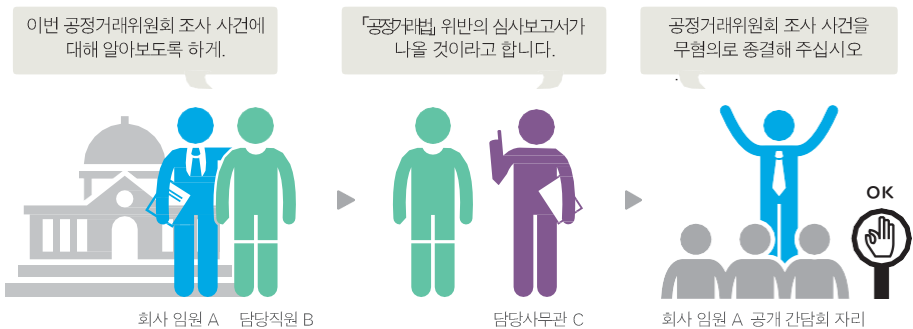
Q 2 3 직무의 진행 상황 확인

QUESTION

회사 임원 A가 공정거래위원회 특정 조사 사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담당직원 B에게 지시하였고, B는 담당사무관 C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의 심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A가 공정거래위원장과 30대 기업 회사 임원들간 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회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 달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A와 B는 부정청탁금지 위반인가요.

ANSWER

A와 B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B의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이고, A의 행위도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청탁행위의 처벌과 신고

04

Q24.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의 대응

Q25.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Q26. 같은 회사 내 다른 임직원의 부정청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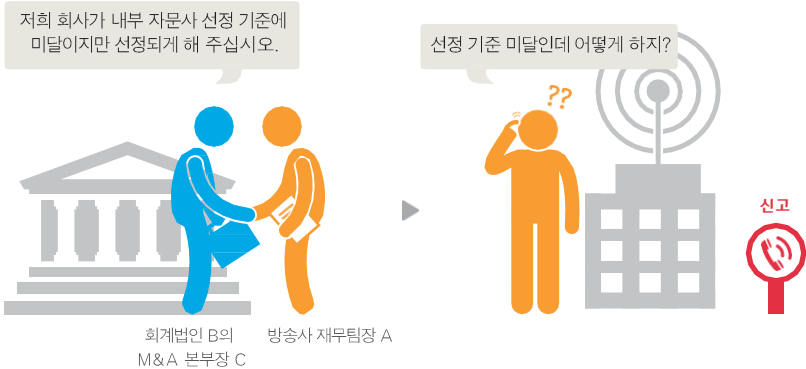
Q 2 4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의 대응**

QUESTION

방송사 재무팀장 A가 M & A 자문사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내부 자문사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회계법인 B의 M & A 본부장 C로부터 M & A 자문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일단 내부 자문사 선정 기준에 못 미쳐서 자문사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알려주고, 자문사 선정에 영향을 미쳐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재차 동일한 부정청탁을 하면 대표이사**(또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신고접수 담당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2 5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QUESTION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곧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두 번 이상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차례 거절했지만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2 6

같은 회사 내
다른 임직원의
부정청탁

QUESTION

甲건설(주) 소속 이사 A가 B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건축법령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 C에게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담당 공무원 C는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 공무원 C에게 한 경우 이사 A도 부정청탁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네. 이사 A와 직원 B 모두 부정청탁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사 A와 직원 B가 업무에 관하여 한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청탁이 **아니라 제3자인 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직원 A와 B는 제3자인 회사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甲건설(주) 또한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한편, 담당 공무원 C는 A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 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유무로 판단합니다.



■ 금품등 수수의 금지



05

- Q27. '동일인'의 의미
- Q28. '1회'의 의미
- Q29. 동일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한 금품 수수
- Q30. 교통편의 제공이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Q31. 제공받은 금품을 고아원에 기부
- Q32. 정가와 실제 구입가가 다른 선물
- Q33. 회원제로 운영되는 숙박 제공의 가액 평가
- Q34. 공직자와 식사를 각자 계산
- Q35.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받은 접대
- Q36. '직무관련성'의 의미
- Q37.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의 식사
- Q38.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Q39.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금품 수수

Q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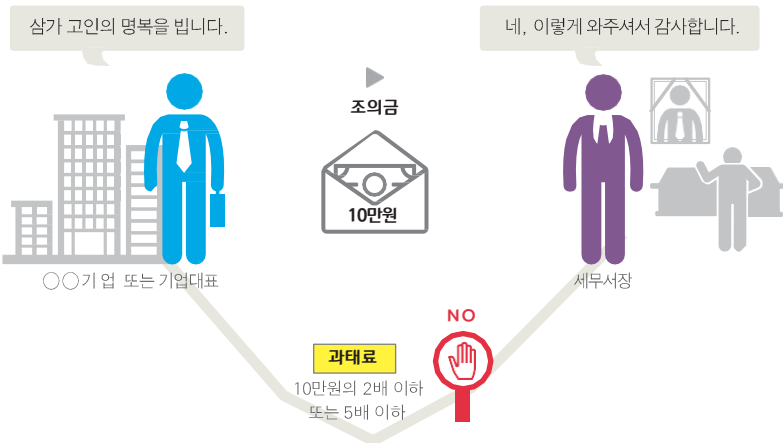
‘동일인’의 의미

QUESTION

기업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부친상에 5만원 상당의 조의금을 기업명 및 대표이사명으로 각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당 비용은 모두 기업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ANSWER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제공하는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입니다. 사안의 경우 조의금이 모두 기업 예산으로 처리될 경우 형식적 명의를 다르더라도 모두 해당 기업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무서장은 기업으로부터 총합 10만원 상당의 조의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이를 수수한 세무서장과 기업의 대표는 해당 금액의 2배 이하, 5배 이하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업 또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Q 2 8

‘1회’의 의미

QUESTION

법무팀장 A는 어릴 때부터 친구인 기자 B가 국장으로 승진하자 오랜 만에 만나서 저녁 7시경 식사를 하고 20만원치 식사를 얻어 먹었습니다. 이에 답례로 저녁 10시경 2차로 술집에서 40만원을 A가 결제한 후, 다음날 새벽 2시에 3차로 다른 술집에서 18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B에게 1회당 각각 20만원, 90만원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아닙니다.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른바 ‘뜨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자 B는 동일인 A로부터 2차, 3차 모두 ‘1회’에 술값에 상응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2차, 3차 비용 총액 220만원(40만원+180만원)을 1/2씩 나눈 11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셈이므로 B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제공한 법무팀장 A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Q 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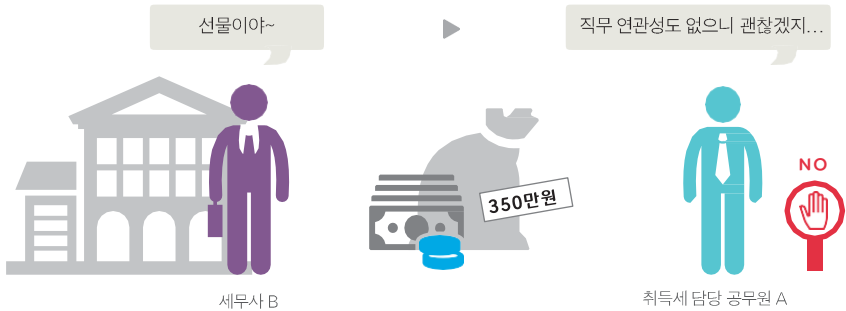
동일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한 금품 수수

QUESTION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매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들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등과 제공한 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Q 3 0

교통편의 제공이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QUESTION

기업에서 세무조사를 나온 관할 세무서 공무원의 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서 기업까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나요.

ANSWER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편의 제공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 조사기관과 피조사기관인 당사자간의 관계,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세무서이므로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과도한 이동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Q 3 1

제공받은 금품을 고아원에 기부

QUESTION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방송사 PD가 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ANSWER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방송사 PD와 연예기획사 대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방송사 PD가 받은 돈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사실을 처벌할 뿐 그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을 재단 기부에 사용했다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Q 3 2
**정가와
실제 구입가가
다른 선물**

QUESTION

선물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10만원짜리 정가제품이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것인가요.

ANSWER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폭 할인된 금액의 경우 등에는 구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자료가 있으면 실제 구매가가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3 3
**회원제로 운영되는
숙박 제공의
가액 평가**

QUESTION

근로감독관 A는 기업의 인사팀장 B에게 국내 유명콘도(1박당 비회원가 60만원 상당) 숙박편의 제공을 요구한 후 B로부터 콘도 숙박 편의를 1박 제공받았습니다. B는 자신이 속한 기업이 보유한 무기명 콘도 회원권을 사용하여 콘도측에 1박당 회원가 15만원 상당을 선결제한 후, A에게 무상으로 콘도 숙박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A가 위 콘도의 비회원인 경우 수수한 금품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ANSWER

사안과 같이 콘도 무상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은 편의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콘도 회원권 보유자로서 콘도 내부기준에 따라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가액으로 받은 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Q 3 4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받은 접대

QUESTION

청탁금지법상 언론사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업의 직원 A는 본부장 B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는 외주제작사 직원 C가 B와 함께 있었고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C가 6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A는 C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B가 식사를 계산했다고 알고 있었다면, 이 경우 A, B, C는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A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만 외주제작사 직원 C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본부장 B는 외주제작사 직원인 C가 계산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B와 C 사이에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어, B는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안은 공직자등인 B가 '제3자인 A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 또한 공직자등에 대한 접대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B는 A의 몫까지 함께, 즉 40만원 상당의 접대를 C로부터 받았습니다. 결국 B와 이를 제공한 C는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3 5

공직자등과 식사 후 각자 계산

QUESTION

신문사 기자인 A는 자신이 출입하는 기업체의 홍보실 직원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1인당 4만원이 나와 각자 계산했다면 괜찮나요.

ANSWER

만약 기업체의 홍보실 직원이 식사 비용을 전부 계산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계산했고 그러한 입증자료가 존재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3 6
‘직무관련성’의
의미

QUESTION

회사 공정거래 실무담당자 A는 대학교 동기이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과 조사관인 B와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A가 회사 업무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사과에 들렀다가 오랜만에 B를 불러내어 함께 저녁을 먹고 식대 1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ANSWER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의미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따라 「형법상 뇌 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 사안의 경우 B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서 평소 A의 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여 소관부서 조사관 직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3 7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의 식사

QUESTION

보건복지부 국장 등 고교 동창 3명이 60만원 상당의 술자리를 한 뒤, 전자업체 임원인 친구가 혼자 계산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오랜 친구 지간이고 복지부 국장과 전자업체 임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체 임원이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해서 보건복지 부국장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Q 3 8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QUESTION

지방자치단체 건설 담당 A국장의 부인이 개최한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건설사 사장 B가 400만원 후원금을 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등은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안의 건설담당 A국장과 지역 건설사 사장 B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A의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A국장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A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이때 A국장이 배우자의 후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Q 3 9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금품 수수

QUESTION

고위공직자 D의 딸인 대학생 E양이 아버지 직속 부하 직원으로부터 120만원짜리 명품백을 선물로 받았다면, E양도 청탁금지법위반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과 그의 배우자에 한정하므로 사안의 명품백을 선물받은 공직자등의 딸 E는 직접적인 청탁 금지법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D가 딸이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묵인한 것이 ‘딸이 공무원 D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딸이 뇌물을 받은 것을 D가 직접 받은 것과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D는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9585판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06

Q40.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한도내의 식사 접대

Q41. 식사 접대 시 서로 다른 가격대의 식사 주문

Q42.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의미

Q43. 업무추진비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구입

Q44. 기자들에게 보내는 명절선물

Q45.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 선물 제공

Q46. 식사와 선물을 함께 수수

Q47. 유가증권이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Q48. 회사자금으로 여러 명이 경조사비를 제공

Q49. 계열사 직원간 식사

Q50. 교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

Q51. 교수와의 용역계약

Q52. 사외이사의 보수

Q53. 사외이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Q54. 시가보다 낮은 금액의 거래

Q55.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Q56. 동창회 회칙에 따라 제공한 금품등

Q57.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

Q58.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Q59. '공식적 행사'의 판단기준

Q60. 공식적 행사에서 특정인에게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

Q61. 제약협회 CP규정에 따른 금품 제공

Q62. 공무원 할인 마케팅

Q63. 결혼식 하객으로서 식사

Q64.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Q65. 기고와 별도로 한 외부강의등

Q66. 방송사 스타 PD의 행사강연료

Q 4 Q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한도내의 식사 접대

QUESTION

청탁금지법은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화환·조화는 10만원),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공품은 10만 원,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무관련자에게 허용 금액 범위 내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라면 항상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아닙니다. **일정금액 범위 내의 식사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갖추지 못하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일 뿐 아니라 만약 해당 식사에 대가성이 결부되어 있다면 뇌물죄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4 1

식사 접대시 서로 다른 가격대의 식사 주문

QUESTION

둘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각각 다른 메뉴를 시켰고 메뉴별로 가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령 공무원인 A가 해당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 직원 B와 식사를 하는데 A는 2만원짜리 단품 메뉴를 시켰고 B는 5만원짜리 코스 메뉴를 먹게 됐습니다. 총 식사비로 7만원이 나왔는데 이때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n분의 1로 분할하는 것은 공직자등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무원 A가 소비한 비용이 총 2만원이라는 점을 영수증·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 3만원이라는 상한액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4 2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의미

QUESTION

관련 업체의 직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한 후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A와 B는 함께 식사 하지 않음).

ANSWER

아닙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을 의미하므로 미리 결제만 할 뿐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 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Q 4 3

업무추진비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구입

QUESTION

관련 업체에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선물을 업무 추진비로 구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보다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나, 그 경우라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상 제한을 받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 4 4
기자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

QUESTION

설이나 추석에 기자들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허용 되는 것인가요.

ANSWER

허용되지만, 그 선물의 제공이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이 라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5만원의 한도 내에서 선물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에 보내는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직무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에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사교, 의례의 목적이 부인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아울러 「형법상 배임수증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4 5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
선물 제공

QUESTION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홍삼)을 선물할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ANSWER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경우 5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에 따라 예외적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에 한정하여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4 6

식사와 선물을
함께 수수

QUESTION

만약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짜리 식사 대접과, 4만원짜리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원 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합계 8만원이 아니라 선물의 가액한도인 5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음식물과선물, 경조사비 등을 같이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 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Q 4 7

유가증권이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QUESTION

커피전문점 기프티콘(1만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외식상품권(3만원) 등이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ANSWER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에 따라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기프티콘 및 외식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들에게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그 가액의 범위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Q 4 8

회사자금으로 여러 명이 경조사비를 제공

QUESTION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하나의 기업에서 공무원인 상주에게, 임직원 10명이 5만원씩 나누어 지급(5만원x10명=50만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임직원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각자 지급하는 경조사비라면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직원 10명에게 5만원씩 나누어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경조사비 가액 상한은 5만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직무관련자들이 몇 명이든 임직원이 각자 개인 돈으로 지출한다면 적법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동일인’의 의미를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금품의 출처’로 보아, 회사도 ‘동일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직원 10명에게 5만원씩 나누어 지급한 경우라면, 수수한 공직자들은 물론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4 9

계열사 직원간
식사

QUESTION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같은 계열사 내의 직원들 사이에 식사 등을 하는 경우에도 금품등 수수 금지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요.

ANSWER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닙니다. **같은 계열사 내라 하더라도 금품등을 수취하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청탁금지법상 금지됩니다. 계열사 직원끼리 친목을 도모하거나 직무 수행의 원활을 위해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대부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계열사라 하더라도 언론 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해 여론 형성 등 언론사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계열사 임직원이 식사 초대를 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3만원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Q 5 0
교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

QUESTION

친분있는 대학교수에 자문의뢰 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학 교수가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한정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등 수수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①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② 8가지 금품 수수 허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의미하고,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수수할 수 있는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교수가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이나 자문계약에 따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과는 무관하게 청탁금지법상 8가지 예외사유 중 하나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원의 '정당성' 관련하여 사례금의 규모, 해당교수의 전문성과 제공하는 자문의 내용, 통상적인 해당 분야의 자문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Q 5 1

교수와의 용역계약

QUESTION

사립대학교 교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가요.

ANSWER

그렇습니다. 계약의 형태는 서면계약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의 형태로 인정되는 이상 계약서 작성이 그 계약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계약당사자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에 따라 지급한 용역비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문제를 삼을 경우를 대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 등은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후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조사기관은 계약서 구비 여부 보다는 계약 전후의 사정 및 대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보아 계약 체결 자체를 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명목상 수단으로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5 2

사외이사의 보수

QUESTION

국립대 교수가 학교의 허가를 받은 뒤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돼 보수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은 법률상 권리에 따라 정당하게 받는 돈은 금품 수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 만큼, 사외이 사수당과 활동비로 받은 돈은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인 경우라도 정당한 취업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취업 제공 그 자체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공이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에는 수령하기로 한 급여가 수수한 금품등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적절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유사한 직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연봉 등을 참고하여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5 3

사외이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QUESTION

기업의 사외이사인 국립대 교수에 대하여, 이사회 참석을 위한 교통비 등 실비나 해외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의 예로 볼 수 있는가요.

ANSWER

임원복리후생지침 등 정당한 권원에 근거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은 정당한 권원 내의 금품은 허용하고 있는 바, 사외이사도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회사와의 계약 및 임원복리후생지침에 따라 모든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서 허용됩니다. 다만, 기업이 법령과 정관 기타 사규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임원에게 다른 임원보다 더 많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5 4

시가보다 낮은 금액의 거래

QUESTION

고위공무원 A가 사업자 B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천만원의 매매로 가장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거래에 따른 반대 급부가 공정한 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 부분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 A가 구매한 가격(1천만원)과 공정한 가격(1억원)과의 차액인 9천만원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결국 A는 사업자인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9천만원어치 금품등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 B는 고위공무원 A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각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5 5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QUESTION

결혼식에 가족이 참석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낸 경우 제재대상인가요.

ANSWER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5 6
**동창회 회칙에
따라 제공한
금품등**

QUESTION

공직자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낸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 또한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5 7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

QUESTION

암 투병 중인 고위 공무원이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으로부터 치료비에 보태 쓰라며 200만원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특별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인정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고위 공무원이 치료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대학 동창인 대기업 임원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람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 유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향 친구, 학교 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 도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5 8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QUESTION

기업의 공장 건설 완공에 따른 준공식 행사만찬에 신문사 기자 A와 협력업체 대표 B가 나란히 앉았는데, 청탁금지법상 식사 제공 한도(3만원) 규정에 따라 A에게는 2만9천원짜리 비빔밥 정식이 제공됐지만 B에게는 5만원짜리 스테이크 정식을 제공하는 등, 같은 참석자임에도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아닙니다. 공장 준공식 행사만찬은 청탁금지법상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일률적인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Q 5 9

‘공식적 행사’의 판단기준

QUESTION

기업 후원을 받아 기자가 해외 취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원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구체적인 목적 및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사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지, **‘통상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사의 목적, 성격, 참석자의 범위, 행사 주체의 내부 기준 및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Q 6 0

공식적 행사에서 특정인에게만 고 가의 기념품을 제공

QUESTION

T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신문사 기자 A가 참석해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습니다.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지급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A가 받은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는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한 금품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블릿 PC는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도 아니고, 가액도 60만원 상당의 고액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금품도 아니어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6 1

제약협회 CP규정에 따른 금품 제공

QUESTION

법령으로서 강제력은 없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제약협회 CP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제약협회 CP규정을 '사회상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서 '기준'의 범위를, 금품을 받는 공직자들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지, 제공자의 내부기준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협회 CP규정 및 그 위임을 받은 세부운용기준은 제공자의 입장에서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의 범위를 공직자들의 기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회상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해석에 따른 운용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6 2

공무원 할인 마케팅

QUESTION

자동차 회사의 영업 직원인 A는 회사 차원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고위공무원인 B에게 '공무원 할인'을 적용해 자동차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아닙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받는 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입니다. **기업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공직자들에게 획일적·일률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Q 6 3

결혼식 하객으로서 식사

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통신업체 임원 자녀의 호텔 결혼식에서 1인당 6만원짜리 식사를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1인당 **3 만원을 초과한 식사를 대접했지만 결혼식 하객 모두에게 제공된 식사이고 하객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사회상규(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6 4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QUESTION

기업이 직무관련성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임직원 대상 강의를 요청하고, 강의료로 시간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2018년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국공립·사립대학 여부를 불문하고 시간당 100만원(2시간을 넘더라도 총 상한액은 없으므로 시간당 100만원씩 지급 가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Q 6 5

기고와 별도로 한 외부강의등

QUESTION

기업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A에게 회사 사보에 기고를 요청하여 70만원 상당의 원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A를 상대로 임직원 대상으로 1시간 강연을 요청하여 강의로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데 A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한 취지는 공직자등이 과도한 사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사안과 같이 동일한 건에 대하여 원고료와 강연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1건의 동일한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둘을 합산한 총액이 상한액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차관이 받을 수 있는 강연료 상한액인 4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원고료(기고) 상한액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청탁금지법상 명확하지는 않습디만, 사안의 경우에는 수수한 금액이 합산하여 110만원인 이상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A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Q 6 6 방송사 스타 PD의 행사강연료

QUESTION

방송사의 스타 PD가 방송 제작과는 관련 없는 청년들을 위한 외부행사에 초청되었습니다. 행사 강연료가 200만원인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사례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PD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PD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이상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라는 원칙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계약에 근거하여 강연료를 지급받는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금품등의 반환 등

07

- Q67.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 Q68. 식사 대접을 받은 다음 동일한 가액으로 접대
- Q69. 금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 Q70. 금품 수수 후 지연하여 반환
- Q71. 집으로 선물이 배송되어 올 경우 조치
- Q72.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접대비를 회사에 청구

Q 6 7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QUESTION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은 곧바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그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의 자진 신고·반환 기간은 ‘지체 없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체 없이’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진 신고를 ‘지체하여’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게 되나, 그 제재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6 8

식사 대접을
받은 다음 동일한
가액으로
접대

QUESTION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다음 번에 반대로 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앞서 대접 받은 부분은 상계되어 교사가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할한 직무 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이 아니거나 3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등은 곧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뿐, 주고받는 방식으로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Q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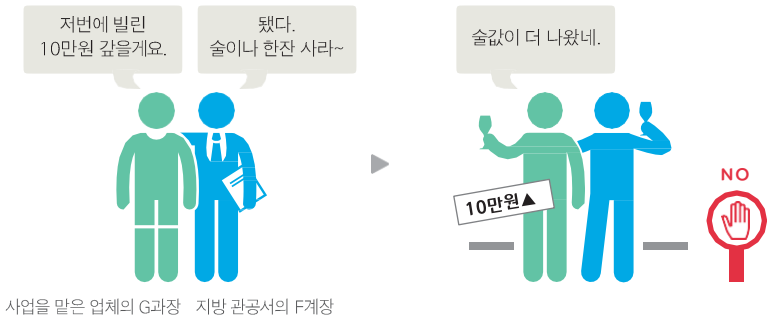
금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QUESTION

지방 관공서의 F계장은 해당 부처에서 발주한 사업을 맡은 업체의 G 과장과 업무적으로 만나면서 스스럼없는 관계로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G과장이 당장 필요한 현금이 없어 무심결에 F계장에게 10 만원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돈을 갚으려 하자, F계장은 “됐다”며 “술이나 한 잔 사라”고 하였는데, 술값은 1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 상환을 식사 대접으로 대신한 것인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NSWER

두사람 간 채무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두사람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F계장은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습니다. **G과장이 F계장에게 10만원의 채무가 있어 F계장에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한 것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Q 7 0
금품 수수 후
지연하여 반환

QUESTION

공무원이 돈을 받고 모른 척 있다가 내사 등 낚새가 이상하다 싶어 자진 신고하고 돈을 돌려준 경우에는 금품 반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금품 반환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의 자진 신고·반환 기간은 '지체 없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체 없이'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모른 척 있다가 낚새가 이상하여' 신고·반환한 것은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를 '지체하여'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게되나, 그 제재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7 1

집으로 선물이 배송되어 올 경우 조치

QUESTION

홈쇼핑방송사의 MD A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협력업체 B의 홈쇼핑 거래 담당자 C가 보낸 한우선물세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홈쇼핑방송사는 '방송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따라서 이에 소속된 MD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A는 즉시 C에게 연락하여 반환해 갈 것을 요청해야 하고,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패의 우려가 있는 식품일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계하여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 참고)



Q 7 2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접대비를 회사에 청구

QUESTION

임직원이 공무원과 예외사유로 허용되는 가액기준인 3만원을 넘는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NSWER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처럼 **공무원과의 식사비용을 회사에 청구하고 이를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것은 회사가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의 신고 및 조치 등

08

Q73. 음해성 신고 및 허위신고

Q74.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한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Q75. '수사필요성'의 판단기준

Q76. 내부징계 후 별도의 법적 제재

Q 7 3

음해성 신고 및
허위신고

QUESTION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거나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였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7 4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한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QUESTION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료부터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괜찮나요.

ANSWER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료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료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할 수 없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Q 7 5

‘수사필요성’의 판단기준

QUESTION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은 위법행위자(임직원, 제3자)에 대한 수사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사필요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이 마련하고 있는 신고처리 절차 및 조사절차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범죄의 혐의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청탁금지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 필요성 여부는 조사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처리 절차 및 조사절차에 따라 충실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해당 사안에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의심되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Q 7 6

내부징계 후 별도의 법적 제재

QUESTION

협력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내부징계를 거처 징계해직한 경우, 해당 임직원은 추가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내부 징계와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신고처리절차상, 수사기관은 조사결과를 세 가지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수사의 필요성 및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2) 과태료 부과대상위반행위일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와 별도로 3) 내부 규정상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 내부의 징계지침에 따라 징계절차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혐의가 있을 시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COMPLIANCE
가이드



APPENDIX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급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들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들의 의무) ① 공직자들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들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 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학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 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 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근친,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들의 배우자는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들에게 또는 그 공직자들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들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들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들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들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들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들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들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들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들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들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들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들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들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들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들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정승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 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 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 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물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89호, 2022. 6. 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부정청탁의금지등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신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2. 사무분장의 변경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할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자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자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들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들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들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들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들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청탁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자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자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조사가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들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7>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부칙 <제27490호, 2016.9.8>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90호, 2018.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9421호, 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20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기관장 등의 이첩·송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이첩 또는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이첩 또는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15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31410호, 2021. 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1년 2월 1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부칙 <제32324호, 2022.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9호, 2022. 6. 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청탁금지법 COMPLIANCE 가이드(3판)

CJ그룹 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해설

발행 기획	CJ주식회사 법무·Compliance실
제정일	2016년 9월 27일
개정일(2판)	2019년 7월 19일
개정일(3판)	2022년 9월 16일
디자인·인쇄	(주)이팝 www.eepop.co.kr

- 본 서적에 기술된 내용은 관계 기관의 자료 및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참고하여, 2022년 9월 8일 현재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서적은 CJ그룹 실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내부 자료로서 관계기관에 대응하는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안에 적용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는 소속회사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청탁방지담당관 또는 CJ(주) 법무·Compliance실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